

기획관리실소관
1997년도제2회추경예산(안)

검 토 보 고

기 획 경 제 위 원 회
전 문 위 원

1)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 예산안 규모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구성비 (%)	기정예산액	구성비 (%)	증 감	
						%
합 계	50,429,579	100.0	54,559,646	100.0	△4,130,067	△7.6
인 건 비	20,447,181	40.5	20,427,181	37.4	20,000	0.1
물 건 비	10,857,798	21.5	10,790,918	20.2	66,880	0.6
이 전 경 비	2,810,350	5.6	2,546,390	4.7	263,960	10.4
자 본 지 출	7,091,570	14.1	7,076,370	13.0	15,200	0.2
용 자 및 출 자	-	-	-	-	-	-
보 전 재 원	26,184	0.1	26,184	0.1	-	0.0
내 부 거 래	4,168,632	8.3	4,168,632	7.6	-	0.0
예비비 및 기타	5,027,864	10.0	9,523,971	17.5	△4,496,107	△47.2

○ 기획관리실 소관 1997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 규모는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545억5천9백만원의 7.6%에 해당하는 41억3천만원이 감액된 504억3천만원의 규모로 편성되었음.

2) 검토내역 및 의견

1997년도 제2회 기획관리실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액 545억5천9백만원의 7.6%에 해당하는 41억3천만원이 감액된 504억3천만원의 규모로서 당초 예산과 제1회 추경시 미반영된 사업과 여건변동에 따른 필수경비만 계상한 예산안으로 사료됨.

○ 이를 성질별로 살펴보면,

· 인건비	2천만원	(0.1% 증)
· 물건비	6천7백만원	(0.66 증)
· 이전경비	2억6천만원	(10.4% 증)
· 자본지출	1천5백만원	(0.2% 증)
· 예비비 및 기타	△44억9천6백만원	(47.2% 감) 으로

이를 세항별, 사항별로 살펴보면,

첫째 기획관리에 있어서는

○ 경상예산으로

· 지역현안사업추진자료 유인에 따른 일반수용비(p28)	5백만원
· 도정주요현안사업 추진에따른 시책추진일반업무수용비(p28)	3백만원
· 도정주요현안사업 추진에따른 시책추진특수활동비(p28)	3백만원

○ 사업예산으로

지방행정 연구원 출연금

1억1천4백만원으로

둘째 공기업 운영에 있어서는

○ 사업예산으로

- 지방공사의료원 전산화사업 (P29) 1억8백만원으로
(교5천4백만원)

청주·충주의료원의 전산화 사업에 따른 리스료로 그중 5천4백만원은 교부금
으로 지원되는 예산임.

셋째 국제교류에 있어서는

○ 경상예산으로

- 국제통상지원센터 현판제작, 전화 및 사용료 2백만원
상담용 집기구입 등 (P30)

○ 사업예산으로

-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출연금 (P30) 4천1백만원
- 국제통상지원센터 전용전화 및 FAX구입 2백만원으로

국제통상지원센터 발족에 따른 통신장비, 사무용 집기의 구입비와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과 당초예산과 제1회 추경시 미반영된 출연금을 계상하여 편성한 예산안
으로 사료됨,

넷째 예산운영에 있어서는

○ 경상예산으로

- 수당 (p31) 2천만원
- 지역 현안사업추진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2백만원
- 경제협력관의 업무추진비 및 직급보조비 3백만원으로

7월호봉 승급에 따라 자연 인상되는 각종 수당과 파견근무중인 경제협력관의
법정경비만 계상한 예산안으로 사료됨

다섯째 도립대학 운영에 있어서는

○ 경상예산으로

- 재산교환 감정평가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p32) 4천6백만원
- 학생유치 및 홍보책자 발송 우편료(p33) 1백만원
- 교수자격 심사위원회 참석 수당외 운영수당 (p33) 4백만원
- 옥천도립대학 홍보및 개교 준비에따른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p33) 2백만원
-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p33) 1백만원
- 옥천도립대학 홍보및 개교에 따른 시책추진 특수활동비(p33) 3백만원
- 교수채용 심사위원 급식보상금(p33) 1백만원
- 레이저프린터 구입(p34) 2백만원

○ 사업예산으로

- 모사전송기의 2종 사무용기기 구입 (p34) 9백만원으로

옥천도립대학의 '98년도 개교를 위한 학생소집 공고료, 사업추진을 위한 사무용기기
구입, 부서운영 법정경비 등 필수경비만 계상한 예산안으로 사료됨.

여섯째 예비비에 있어서는

- 예비비 (p34) △44억9천6백만원을

감액하여 필수사업비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예산안으로 사료됨.

일곱째 법무관리에 있어서는

○ 경상예산으로

- 행정심판위원 현지확인 여비보상 (p35) △1백만원
- 소송행정 포상금 (p35) 1백만원으로

자체예산의 경정을 통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기위한 예산안으로 사료됨.

이와같이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법정경비,도립옥천전문대학의 개교준비에 따른 경비 당초예산과 제1회 추경시 미반영된 예산등 불요불급한 예산은 제외한 필수 경비만 계상한 예산안으로 사료됨.